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1 ~ 1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1. 02. 28.
제 출 자	거창군청

1. 개정이유

○ 지자체 「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」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(2010.4.21)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현행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식을 창업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개선·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2000년부터 추진해 오던 「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보조금 폐지 권고(“10.4.21)에 따라 종료하고 업체 수혜효과가 큰 농공단지 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 (안 제18조 삭제).

○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의 해외품질규격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조항 삭제

나.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보조하는 현행 지원 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창업 성공률 향상을 도모함 (안 제19조의3).

○ 창업보육센터 지원방법 변경

- 현행 :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지원
- 변경 :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이나 행정지원 및 창업동아리·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6조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5조의2

나. 예산조치 : 2011년 당초예산 확보(20,000천원)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, 예산담당)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10. 12. 29. ~ 2011. 01. 17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의3(창업 지원)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(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)에 대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·발전에 필요한 자금, 인력, 기술, 판로,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동아리·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)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혁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,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, 신청 및 정산은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19조의3(창업보육센터 지원) ① 군수는 창업보육센터 내 보육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한정하며,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/p>	<p>제19조의3(창업 지원)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(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)에 대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·발전에 필요한 자금, 인력, 기술, 판로,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동아리·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